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61-4203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대외협력팀 부서장: 송자은 부장 담당자: 고정은 과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5-110호

시행일자: 2022.5.2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
개정에 따른 표시 관련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(시행 '22.6.19.)에 따라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(식약처 고시)」 일부개정고시(2022.4.27. 개정, 2022.6.19. 시행)한 바 있습니다.

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

- ▲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'질 내 사용하지 말 것' 신설 ▲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, ▲화장품 유형 조정 등

☞ 시행일: 2022.6.19.

다만, 외음부세정제 및 에어로졸 제품 포장의 경우, 2022.12.19.일 시행되며,

종전 규정에 따라 기재된 포장은 시행일(2022.12.19.)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

3. 동 고시 개정사항의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(시행 '22.6.19.)에 따라 종전 '화장품 사용 시의 주 사항'에서 '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'으로 변경 사항 및 종전 '만 3세 이하 어린이'에서 '만 3세 이하 영유아'으로 변경 사항은 단순 용어 변경이므로 제품의 제조일정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변경사항 적용 가능

2. 외음부세정제 주의사항에 신설된 기재문구*는 시행일(2022.12.19. 시행) 이전이라도 적용 가능하며, 충전 규정에 따라 기재된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

* 신설된 기재 문구 : 외음부에만 사용하며,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

3.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9) 가) 기재사항은 「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·안전성평가 기준(KGS FP211)」

3.2.2.1.1 (11) 표3.2.2.1.1의 에어로졸의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기재

* < 「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·안전성평가 기준(KGS FP211)」 표 3.2.2.1.1 에어로졸제품 기재사항 >

에어로졸의 종류	용기에 기재 할 사항	
	연소성	주 의 사 항
1. 불꽃길이 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		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1. 온도가 40℃ 이상 되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2.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3. 사용후 잔 가스가 없도록하여 버릴 것 4.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
2. 제1호 이외의 것	가연성 (화기주의)	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1.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2. 난로, 풍로등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3.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4. 온도 40℃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5.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6.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7. 사용후 잔 가스가 없도록하여 버릴 것 8.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

[비고] 인체용 에어로졸의 제품은 상기 내용 외에 “인체용” 및 다음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.

1. 특정부위에 계속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

2. 가능한 한 인체에서 0.2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. 다만, 3.2.2.1.1(3-2)의 제품은 제외한다

* 3.2.2.1.1 에어로졸 충전 (3-2) 「약사법」 제2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 중 물이 내용물 전질량의 40% 이상이고 분사제가 내용물 전질량의 10% 이하인 것으로서 내용물이 거품이나 반죽(gel)상태로 분출되는 제품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